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

				(앞 쪽)
	① 성 명	② 생년월일		
출자자 (투자자)	③ 주 소		(전화번호:)
			(_	,

출자지분 등 변경 명세

④ 출자일 (투자일)	⑤ 조합명 (위탁회사·벤처기업명 • 투자신탁명)	⑥ 출자 금액 (투자금액)	⑦ 이전·호수 (양도·환매) 금액	8 출자 잔액 (투자잔액) (⑥ - ⑦)	9 이전・회수일 (양도・환매일)	⑩ 원천징수 여부
계						
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4조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자지분 등이 변경되었음을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투자조합관리자 등

(서명 또는 인)

귀하

유 의 사 항

- ※ 이 서식은 해당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신청한 원천징수의무자, 납세조합,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.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납세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.
- 1. 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
- 2. 납세조합이 해산한 경우
- 3.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
- 4. 보험모집인 또는 방문판매원이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

작성방법

- 1. "⑥ 출자금액(투자금액)"란에는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이 이전 또는 회수되거나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 양도 또는 환매되기 전까지의 금액을 적습니다.
- 2. "⑦ 이전・회수(양도・환매)금액"란에는 다음의 금액을 적습니다.
 - 가.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, 한국벤처투자조합, 신기술사업투자조합, 또는 부품·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: 출자지분이 이전 또는 회수된 금액
 - 나.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: 해당 수익증권이 양도되거나 환매된 금액
 - 다.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: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
 - (1) 출자자가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을 이전 또는 회수한 경우: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

출자지분 중 이전 또는 회수된 금액 ×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 총액

(2)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을 이전 또는 회수한 경우: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지분 중

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×
 이전 또는 회수된 금액

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 총액

- 라.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한 경우: 출자자가 출자지분을 이전 또는 회수한 금액
- 3. "⑩ 원천징수 여부"란에는 거주자가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였을 경우 "여", 해당없을 경우 "부"로 적습니다